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2. 가입 요건

이 보험으로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 받는 경우에 한한다.

3.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적립형, 거치형]

연금개시나이(Y)		만55세 ~ 70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Y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Y세 계약해당일부턴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Y세 계약해당일부턴 5, 10, 15, 20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만18세 ~ (Y-1)세

[즉시형]

구 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만Y세 계약해당일부턴 종신까지	만Y세 계약해당일부턴 1년 ~ 20년(연단위)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Y)	만55세 ~ 80세	만55세 ~ 80세

※ 확정연금형의 경우 계약이전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전 받은 후 계약의 총 연금지급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이어야 함

4. 보험료 납입기간

- 적립형 : 1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
- ※ 계약이전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전 받은 후 계약의 총 납입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10년 이상이어야 함

5. 보험료 납입주기

- 적립형 : 월납
-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

6. 납입보험료의 한도

- 적립형 : 월 12만원이상 ~ 100만원 이하
- 거치형, 즉시형 : '9. 기타' 의 '사.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중 (2)항에 의한 이전금액을 한도로 한다.

7.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연도말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방법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소멸시에 보험금 등에 더하여 지급한다.

(2) 연금개시일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금개시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지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1) 및 (2)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9. 기타

가.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적립계약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A.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 수익
-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 비용
-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 산출식} = B_1 \times r + B_2 \times (1 - r)$$

- ◆ B_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 B_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3) (2)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5)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 (6)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나.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보험가입금액

- 적립형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월납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으로 한다.

- 거치형, 즉시형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바.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사.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4) 이 보험계약으로 이전받은 계약의 처리

가) 보험료가 납입 중인 계약

이전받은 금액으로 이 보험의 거치형에 가입하고, 잔여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절상하여 이 보험의 적립형에 가입하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개시일 및 연금지급기간은 동일하게 하여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이 보험의 적립형과 거치형은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의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이 보험의 거치형에 가입한다

다) 연금지급중인 계약 또는 연금지급조건(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등)을 충족한 계약

이 보험의 즉시형에 가입한다

다만, 이전 되기 전 계약에서의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한다.

라) 회사가 이전받은 계약이전 금액은 부가하는 특약의 보험료로 대체할 수 없다.

(5)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다.

아. 적립형 및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차.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